

한별고등학교 학생회칙



제정 2024. 7. 18.

전문

1965년 3월 9일 개교한 삼례여자고등학교 즉 한별고등학교의 유구한 전통을 계승한 우리는, 학생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한별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회칙을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배움과 익힘에 대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배의 안전과 자유와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학생자치회의 발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한별고등학교 학생회칙을 제정한다.

이상 2024년 7월 18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여 가결된 본 회칙의 발효를 인정함.

한별고등학교 58대 학생자치회장·대의원회 의장 이 주 향 

한별고등학교 대의원회

제1장 학생자치회 총칙

제1조(회원) 본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2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조(금지 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조(승인 및 효력정지)

①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회의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5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6조(임원 및 부서)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 1인
2. 부회장 2인(1학년(2)/2학년(3))
3. 각 부의 부장 1인, 각 부의 차장 1~3인

② 본 회의는 임기별로 선출된 학생자치회의 회의를 거쳐 해당 임기에 필요한 부서를 편성 및 조직한다.

<예시>

1. 기획재정부: 본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 및 행사에 필요한 예산의 출납을 담당한다.
2. 홍보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를 담당하고,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미디어물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한다.
3. 문헌기록부: 공식적인 회의에서의 문서 및 정기·임시회의록 작성, 문서·기록물 정리 및 공개 등의 일을 담당한다.
4. 행사부: 본교 학사일정 중 학생자치회가 맡는 행사(축제 등) 및 학생자치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5. 대외정보부: 본교 학생들과의 소통을 전담하며 설문조사, 여론조사, 의견 수렴 및 행사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담당한다.

③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학생자치회의 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 관장한다.
4.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회의 임원은 각 학급의 실·부실장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7조(선출·자격·임기)

① 본회의 임원 선출은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임원 선출은 7월 중에 실시한다.
 2. 학생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각부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단(학생회장, 부회장)이 선발하고,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4. 입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당선자 확정 등 선거에 관한 세부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본회의 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선거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③ 본회 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 부회장은 당해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까지로 한다.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은 당해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학기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8조(자격 정지) 본회 임원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를 받거나 중대한 교칙 위반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 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 ① 학생자치회 임원에 대해 그 교칙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회장단 3인과 학생자치회 내부 5인과 대의원회에서 학년별 2~3인으로 구성된 자격정지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 ②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자격정지심의위원회에서 재적 인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의 해임을 학교장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학생회장단 외 학생자치회 임원에 대한 자격정지심의위원회 재적 인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생자치회 임원의 해임을 학생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 ④ 가결 기준 인원의 비율이 정수가 아닐 경우, 소수점 아래는 올려서 계산한다.

제2장 대의원회

제9조(목적)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활동의 심의 및 의결,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구성)

-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의 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청렴 의무)

- ① 대의원회 의원은 모범과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② 대의원회 의원은 학교와 학생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자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감사.
3. 학급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건의 및 의견 제안.
4. 본 회칙의 개정안 상정 및 가결.

제13조(회의)

- ① 대의원회는 매월 1번 정기회 개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대의원회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때에 개회한다.
-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다. 단, 회칙 개정은 3분의 2로 한다.
- ⑤ 대의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에 학생자치회 임원이 참관하여 학생자치회의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선거관리규정

제14조(목적) 학생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무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선거권)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권은 본교 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16조(피선거권)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년도에 학기 등록을 필하고 본교 1, 2학년(회장 3학년, 부회장 2, 3학년 각 1명)에 재학 중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학생회 정·부회장으로서의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제17조(선출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① 단독출마의 경우 찬성, 반대를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이후 선거에 관한 세부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출마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제18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의원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자치회 3학년 임원 10인 내외로 선거 3주 전에 조직한다.
- ③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보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4.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5.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20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발부하는 별지 제1호부터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 재학생 2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추천서 (단, 재학생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 후보자 찬조연설자 1명 및 참관인 1명의 명단

라. 선거운동 도우미 신청서

마. 후보자 공약서

② 위원회에서 공지한 입후보 기간 외에는 후보자 등록이나 사퇴 등의 조정을 할 수 없다.

제21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공고에 명시된 기간 안에만 행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 취소를 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상대 후보의 비방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없다.

④ 금품 수수나 선물 제공 등 불건전한 선거운동은 일절 금한다.

⑤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들의 합동 연설 발표회를 주관한다. 단, 합동 연설 발표회의 시간 및 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공약의 실효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2조(선거공고) 선거일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선거일 이전에 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23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②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은 각 후보가 1인을 추천한다.

③ 개표는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 당일 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개표 완료 직후, 그 결과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고한다.

⑤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자세한 일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투표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24조(당선인)

① 위원회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대의원회(2/3이상 출석)를 열어 후보 중 다 득표한 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대의원회의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가 난 때부터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25조(자격박탈)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선거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자

2. 부정한 선거운동(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유포 등)을 한 자

3. 기타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26조(기타조항)

① 기타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선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

회장	학 번		성 명	
2학년 부회장	학 번		성 명	
1학년 부회장	학 번		성 명	

본인은 2024년 7월 12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공약서 1부.
2. 추천서 1부.

2024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한별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 · 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별지 제3호서식]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2024년 7월 12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호	학번	성명	비고
1			
2			
3			
4			
5			
6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한별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2024년 7월 12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참관인 명단(후보자 제외)

학년.반	성명	비고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한별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찬조연설자 신고서

2024년 7월 12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찬조연설자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찬조연설자 (후보자 제외)

학년.반	성명	비고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한별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서식]

학생자치회 임원 후보자 공약서

회장	이름	공약

본인은 2024-2025학년도 제59기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공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후보 (인)

한별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하